

2026

수의사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엠북 농수산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1시간 8분 완성

도서명 : 축산물위생관리법

ISBN : 979-11-7393-088-1

발간일 : 2025-10-10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7,000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p11)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p17)

제4장 검사(p36)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p53)

제6장 감독 등(p97)

제7장 보칙(p104)

제8장 벌칙(p111~120)

[약어]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는 시장, 군수, 자치군의 구청장 또는
시, 군, 자치구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처장등은 처장, 시도지사, 시군구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적정보는 이력추적관리정보

가공품은 축산물가공품

거부등은 거부, 방해, 기피

자체기준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등은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규격은 가공기준, 성분규격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대통령령)

갈색은 시행규칙(총리령)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가축 사육/도살/처리, 축산물 가공/유통,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정함
-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

2. 정의

가. 가축

-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
멧돼지 포함), 닭, 오리
- 식용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나. 축산물은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1) 식육은 식용 목적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2) 포장육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 무료 제공
포함)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분쇄
포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
첨가안함

3) 원유는 판매, 판매 위한 처리/가공 목적

착유 상태 우유와 양유

- 집유는 원유 수집, 여과, 냉각, 저장

4) 식용란은 식용 목적 닭, 오리, 메추리 알

5) 식육가공품은 판매 목적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을 원료로 해 가공한,

- (햄버거패티, 미트볼, 돈가스 등)

분쇄가공육제품

- 갈비가공품

- 식육추출가공품

- 식용 우지(쇠기름)

- 식용 돈지(돼지기름)

- 식육간편조리세트

6) 유가공품은 판매 목적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원유 등을 원료로 해 가공한,
-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7) 알가공품은 판매 목적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알을 원료로 해 가공한,
-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다. 작업장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보관장

라. 기립불능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함

**마.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이하
추적관리)는**

- 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 안전성 등 문제 발생시 가공품 이력을
추적해 원인 규명과 조치 할 수 있게 함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축산물에 관해 법에 규정 없으면
식품위생법 따름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3조의2~5조

1.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등

가. 설치

1) 처장 자문에 응해 축산물 위생 주요 사항

등 조사/심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둠

2) 조사/심의 사항

-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오염 방지
-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 잔류 방지
- 기술지도, 교육
- 가공/포장/보존/유통 기준, 성분 규격
- 안전관리인증기준
- 수입/판매 등 금지
- 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나. 구성

1)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위원

30~50명

- 공무원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2)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 위원은 다음 중 처장이 위촉/임명

a) 축산물 위생이나 소비자 보호 학식/경험
풍부한 자나 축산물 영업 종사 자

- 위촉시 학회, 전문가 단체 등 추천 받을 수
있다

b)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축산물
생산/유통 담당 공무원

3) 위원 임기 2년

-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 재직 기간

다. 운영: 위원회에,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분야별

분과위,

- 축산물 국제기준, 규격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위원 둘 수 있다

2. 축산물의 기준과 규격

가. 가축 도살/처리, 집유 기준은 총리령

나. 처장은

1) 공중위생상 필요시 축산물에 대한 다음 사항 고시 가능

- 가공/포장/보존, 유통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
-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

-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2) 기준/규격 미정 축산물에 대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 가공/규격을 제출하게

해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검토 거쳐

기준/규격 고시 전까지 한시 인정 가능

다. 가축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상기 기준등 따라야 함

- 판매 목적 수입 축산물도 같다

라. 상기 기준등에 맞지 않는 축산물은 판매,

판매 목적 보관, 운반, 진열못함

마. 처장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준/규격 인정 받은 때
이를 취소 요

바. 수출 목적 축산물의 기준등은 수입자
요구에 따를 수 있다

3. 용기등의 규격 등

- 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축산물 용기등(용기, 기구, 포장, 검인용/인쇄용
색소) 규격 등 고시 가능

- 규격 등이 정해진 때 이에 적합한 용기등
사용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7~10조

1. 가축의 도살 등

가. 가축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

가공/포장/보관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함
(예외)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살/처리

- 도살/처리한 자는 시도지사에 신고

-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
판매 가능

2) 시도지사가 소/말을 제외한 가축 종류별로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하기

위해 도살/처리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 종류별로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 직접 조리해 판매(이하 자가 조리/판매)하기 위해, 처장 고시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

나.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이외 원인으로 기립불능된 가축을 도살/처리해 식용, 판매못함

- 국가/지자체는 질병검사 후 폐기처리하고,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

다. 사슴을 자가소비나 자가 조리/판매 하기

위해 도살/처리시 시도지사, 시군구에
도살/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 검사 요청 가능

- 시도지사,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한 검사관에 검사 하게
함

라.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합격표시
- 예외) 검사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 원하지
않는 때

2. 위생관리기준

가) 영업자(허가 받거나 신고 한 자), 종업원이

작업장,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함

나)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작업장, 업소에서 영업자과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요
- 예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이하 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이하 인증업소)로 인증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3.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기준)